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8호

2026년 「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」 공고

2026년 「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월 26일

산업통상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□ **(사업목적) 공급망 단위의 탄소감축 및 검증 지원**을 통해 산업계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

□ **(사업기간)** 협약일 ~ 2026년 12월 31일(목)까지

□ **사업 추진체계**

구 분		역할 및 의무
총괄기관 (산업통상부)		- 정책수립, 사업계획, 예산확보, 사업공고 등
운영기관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)		- 사업 총괄 관리(기획, 운영, 정산 등) -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·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- 사업 성과 관리 및 컨소시엄 협의체 운영 등
컨소시엄	**주관기업** (대·중견기업)	-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- 협력기업 지원방안 수립 및 이행 등
	협력기업 (중소·중견기업)	- 탄소감축 시설·설비 구축 및 운영 - 사업 수행 결과 및 감축성과 보고 등
	협업기관 (컨설팅기업 등)	-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·보완·취합 등 지원 - 탄소감축량, PCF 산정 등 사업 성과 분석 수행 -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행정절차 전반을 총괄 지원하고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과의 Coordinator(소통·조율) 역할 수행
재원관리기관		- 주관기업의 출자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(교부·정산·반납 등) **※ 주관기업이 현금 출자할 경우, 주관기업에서 별도로 지정**

2. 사업 내용

□ 지원규모 및 범위

○ **(지원예산)** 105억원*

* 운영기관 등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포함

○ **(지원규모)** 컨소시엄당 1년 최대 50억원(컨설팅비용 포함, 검증비용 제외)

○ **(지원범위)** ① 협력기업의 탄소감축 설비·시설 도입 비용
② 공급망 탄소 감축산정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
③ 제품 탄소발자국 제3자기관 검증 비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 기준
① 감축	· 협력기업의 감축설비 구축 비용	· **최대 지원율: 중소 60%, 중견 50%** ※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율 차등 적용
② 산정	· 컨설팅 비용 * 사업 신청, 결과 보고 등 행정 지원, 감축량 산정, PCF 산정 등	·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한도 · 컨설팅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 ❶ **(필수)** 행정+감축량 산정: 2천만원/기업 ❷ **(선택)** PCF 산정: 1천만원/기업
③ 검증	· 제3자기관 검증 비용	· 운영기관 예산 1억원 이내에서 지원

※ 유의사항 ※

① 감축설비 도입비용은 협력기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율 초과 불가
② 컨설팅비용은 업무범위 및 지원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기준으로 별도 편성
③ 3자기관 검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'검증 신청'을 표시해야 하며, 사업비에 검증비용 편성 불필요(추후 운영기관에서 심사 및 지급 여부 결정)
④ 별도 제공되는 엑셀파일에 세부 예산내역 작성 필요

구분	탄소감축 설비·시설 예시
직접(Scope 1) 감축	· 연료전환(다배출 연료 → 저탄소 연료) · 물질전환(High GWP 물질 → Low GWP 물질) · 탄소포집설비, 불소가스 저감설비 · 기타 공정개선 등
간접(Scope 2) 감축	· 전력·연료 절감 설비(인버터, 고효율 설비 등) ·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(폐열 회수 보일러, 열교환기 등)

3. 지원대상

□ 지원대상

○ 공급망 탄소관리가 필요한 수출기업이 포함된 「주관기업-협력기업-협업기관」 컨소시엄(※ 개별기업 지원 불가)

※ 공공기관은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

【 기업 구분 】

·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·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· 대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· 공공기관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○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【 제한조건 】

□ 공통(주관기업, 협력기업, 협업기관)
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
·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*이 50% 이상인 경우
 * 자본잠식률(%) = [(자본금-자기자본)/자본금]×100
·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
·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·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·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·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·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협력기업

·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
· 주관기업의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
· 협력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탄소감축 설비·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

○ 협력기업 및 컨설팅기업은 아래 「**지원자격**」 사항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

【 지원자격 】

□ **협력기업**

· 주관기업과 물품 납품/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

□ **컨설팅기업** **※ 아래 ① 자격 필수 충족, ②~③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**

① 최근 3년 내 사업장·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 산정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인 경우**(필수사항)**

② 상근 컨설턴트의 사업장 또는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관련 자격* 보유 2인 이상인 경우

* 온실가스검증심사원, 국제통용발자국검증심사원, 환경성적표지

③ 4대 보험 가입 기준, 상근 인력 10인 이상

○ 주관기업은 아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

【 컨소시엄 구성 시 고려사항 】

□ **(협력기업)** ①**공급망 내 중요도**와 ②지원사업의 **예상 탄소감축 효과**를 고려하여 구성

① **공급망 내 중요도** : 협력기업이 주관기업 공급망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

· 주관기업 매출 또는 원가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, 필수 원자재/부품 여부

· 주관기업 Scope 3 카테고리 1 "구매한 원자재 및 서비스" 배출량 또는 제품 탄소발자국(PCF)에서 협력기업의 배출량 비중

· 기타 주관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(기술의존도, 품질영향도 등)

② **탄소감축 효과** : 협력기업 탄소감축 설비·시설 도입 비용 대비 예상 감축량*

□ **(재원관리기관)** 주관기업에서 현금을 출자할 경우, 정부지원금과 출자금을 함께 관리 할 수 있는 기관(비영리기관)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

※ 주관기업에서 협력기업 & 컨설팅기관 외 별도의 기관·기업을 컨소시엄에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함

4. 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절차

ㅇ (3단계 평가) ①사전검토 ⇒ ②선정평가 ⇒ ③최종심의

□ 평가방법

① **(사전검토)** 운영기관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제한조건 및 지원자격 등 적격 여부 검토 및 제출서류의 신뢰성을 검증

☞ **부적격 협력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, 부적격 컨설팅 기업은 교체 요청**

② **(선정평가)**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기반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각각 평가 후 최종 종합점수 산정

※ 단,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현장조사 또는 대면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운영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에 미대응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**(개별점수 산정)** 주관기업, 협력기업 개별평가 결과에 대해 각각 평가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
- **(종합점수 산정)** 주관기업 점수와 **협력기업 평균 점수**를 각각 50% 비중으로 반영하여 산정

> ※ **컨소시엄 종합점수 = (주관기업 점수 x 0.5) + (협력기업 평균 점수 x 0.5)**
>
> ☞ "협력기업 평균 점수"는 사전검토(최저점 50점으로 반영)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된 협력기업의 점수도 포함하여 산술평균 값으로 산정하므로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필요

- **(선정기준)** 주관·협력기업의 개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컨소시엄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평가 단계 통과
- **(원가계산)** 선정평가를 통과한 협력기업의 사업비는 원가계산기관을 활용하여 원가계산 진행

※ 대상 협력기업은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③ **(최종심의)**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및 컨소시엄별 정부 지원금액 결정

- **(컨소시엄 내 정부지원금 조정)** 최종 확정된 정부지원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작아 컨소시엄 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주관기업이 협력기업과 협의하여 조정 후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

※ 협력기업의 사업참여 포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

- **(수정 사업계획서 제출)** 운영기관의 확인을 거쳐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

【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 】

구분	검토·평가 주체	검토·평가 내용
①사전검토	운영기관	- 공고문에 명시한 제한조건 및 지원자격 등의 적격여부 검토 - 제출서류의 신뢰성 검증
②선정평가	평가위원회	- (주관기업) 사업총괄 및 관리역량, 지원계획 실효성, 감축성과의 실현가능성 등 평가, 공급망 관리 업종 가점 - (협력기업) 감축 필요성 및 시급성, 감축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수행역량 등 평가, Scope 1 감축시설 가점
	원가계산기관	- 선정평가를 통과한 협력기업의 감축설비·시설의 원가계산 진행 - 운영기관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한 조정된 사업비를 운영위원회에 제출
③최종심의	운영위원회	- 컨소시엄 선정평가 결과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원 대상 및 범위 결정

5. 사업 신청

□ **신청 기간** : 2026년 1월 26일 ~ 3월 6일 17:00 까지

□ **제출 서류**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* 등

*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(www.kitech.re.kr),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kncpc.or.kr),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compass.or.kr)에서 다운로드, 양식의 임의 변경시 탈락 처리

□ **신청 방법**

○ **(이메일 신청)** 주관기업에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취합, 주관기업 신청서류와 함께 co2@kncpc.re.kr로 제출

> **※ 유의사항 ※**
> ·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파일(HWP)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(단,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비 산정은 제공된 엑셀파일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)

□ **문의처**

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

☎ 02-2183-1517, 1519 / Email: co2@kncpc.re.kr

6. 사업비 관리

□ 사업비 구성

○ **(협력기업)** 협력기업의 사업비는 탄소감축 ①**설비 구매 및** ②**필수 설치 공사**로 한정하며 인허가비, 운영비, 인건비, 유지보수비, 부가가치세 등은 불인정

구분	포함 대상
① 설비비	· 감축설비 구매비, 설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장치 포함
② 설치공사비	· 설비 설치에 필수적인 전기·배관·덕트 등 연결공사 · 바닥 보강·기초 확대 등 구조 보강 공사, 안전시설 설치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공사 · 기타 설비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공사
③ 회계정산 수수료	· 정부지원금에서 계상할 수 없고 민간부담금으로 집행

○ **(컨설팅기업)**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, 출장비, 간접비(총 사업비 5% 이내)로 구분하며, 회계정산 수수료는 정부지원금에서 계상할 수 있음

【 총 사업비(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) **구간별 회계 정산수수료 】**

총사업비 구간	**정산수수료**(원)
3억원 이하	900,000
5억원 이하	1,000,000
10억원 이하	1,200,000
10억원 초과	1,500,000

* 부가세 별도

○ **(재원관리기관)** 재원관리기관 운영비는 주관기업 현금 출자금에서 부담

□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집행

○ **(민간부담금 납부)** 주관기업의 현금출자금 및 협력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부득

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

○ **(지급)**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지급 30%, 설비 설치·구축 완료 확인 후 70% 지급함, 다만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급 비율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

○ **(집행)** 정부지원금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따라 집행하며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5년간 집행증빙을 보관해야 함

□ 회계정산

○ **(공통)**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, 정산결과 집행잔액,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, 지정회계기관이 불인정한 금액은 운영기관 지시에 따라 반납해야 함

- **(협력기업)** 정부지원금, 주관기업 현금출자금 및 협력기업 민간부담금 포함
- **(컨설팅기업)** 정부지원금 대상

□ 정산 사후 조치

○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정산 완료 후에도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재정산 및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7. 유의사항

※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비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.

□ 지원대상

○ **(감축설비)** 태양광 등 발전설비는 아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상한으로 지원하며 총 정부지원금의 50% 이내로 사업비를 구성해야 함
- 잉여 전력량은 상계거래, 직접판매 등 한국전력공사와의 거래가 불가하며,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사업 신청시 해당 과제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하고 최근 2년 이내 전력량 증빙자료 제출 필요

○ **(설비구매)** 협력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감축설비 구매 관련 계약 체결이 확인된 경우 및 공급기업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된 경우, 정부지원금 교부 변경·취소 또는 운영요령의 제재조치(정부지원금 환수, 사업참여 제한 등)를 취할 수 있음

○ **(선정취소)*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부처·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사업 시작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협약체결

○ **(협약체결)** 운영기관은 최종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가 완료된 컨소시엄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

□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

○ **(사업운영)** 감축설비·시설은 협약기간 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사업 일정 내 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지원해야 함

○ **(중간점검)** 운영기관은 사업 진도 확인을 위하여 중간보고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수행기업은 점검에 협조해야 함

○ **(결과보고서)** 사업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○ **(사후 성과보고)** 사업 종료 후 3년간('27~'29년) 탄소감축 실적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

○ **(사후 설비관리)** 감축설비 의무 운영기간(5년) 동안 총괄기관의 승인 없이 해당 설비를 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

□ 성과확산

○ **(성과교류회)**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정기 성과 교류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○ **(성과확산)**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사업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,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8. 사업추진 일정

추진 절차	수행 주체	추진 일정	세부 내용(안)
시 행 계 획	산업부 ↔ 운영기관	~'26.1월	■ 당해연도 시행계획 확정 및 통보 ■ 당해연도 수행계획 보고
⇩			
사 업 공 고	산업부, 운영기관	'26.1.26 ~ '26.3.6	■ 사업공고 및 사업 설명회 개최 ■ 사업 신청 접수
⇩			
선 정 평 가	산업부·운영기관	'26.3 ~ 4월	■ 운영기관 사전검토 ■ 평가위원회 개최 ■ 원가계산검토 ■ 운영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
⇩			
협 약	운영기관 ↔ 컨소시엄	'26.4월	■ 운영기관-컨소시엄 협약 ■ 협약식 개최
⇩			
사 업 수 행	컨소시엄	'26.5~12월	■ 감축설비 도입·구축·시운전 등 ■ 감축량 및 탄소발자국 산정
⇩			
중 간 점 검	운영기관 → 컨소시엄	'26.9~11월	■ 서면 및 현장점검
⇩			
결 과 보 고	컨소시엄 → 운영기관 → 산업부	~'27.2월	■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■ 회계 정산 보고서 제출
성 과 교 류	전체	수시	■ 고위급 전략 교류 협의체(Alliance Forum) ■ 현장 실무 협의체(Roundtable) 등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1 **선정평가 기준**

□ 주관기업 평가 (100점 만점)

평가항목	배점	평가요소
사업 총괄 및 관리 역량	20	· 공급망 특성 및 협력기업 선정의 타당성 · 전담조직 구성 및 관리체계의 전문성
재원출자 및 지원계획의 실효성	30	· 현금·현물 출자 규모 및 적정성 · 협력기업 지원방식의 구체성
감축성과의 실현 가능성	30	· 컨소시엄 전체 정량적 감축효과 * 정부 사업비당 감축량($tCO_2eq.$/억원)
성과확산 및 사후관리계획	20	· 공급망 내 성과확산 전략 및 성과활용 계획
가점	최대 3	· 공급망 탄소정보 관리 및 규제대응 필요 업종

□ 협력기업 평가 (100점 만점)

평가항목	배점	평가요소
감축 필요성 및 시급성	10	· 규제 또는 고객사 요구로 인한 시급성
	15	· 최근 3년 평균 배출량
감축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	25	· 도입 설비, 감축기술의 타당성
	25	·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
사업 수행역량 및 지속가능성	15	· 사업 준비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
	10	· 재무 건전성
가점	최대 3	· 사업장 내 온실가스를 직접배출하는 공정에 대한 감축설비(Scope 1)